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46

발의연월일: 2021. 3. 17.

발 의 자:서영교·김영배·김영호

박상혁 · 신정훈 · 양정숙

오영화 · 오영후 · 이해식

임오경 · 임호선 · 한병도

의원(12인)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른 업체의 불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체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절차를 완화하며, 가맹점 관리를 위해 제한 대상을 세분화하여 업종과 개별 사업체를 구분하고,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위해 지급한 자금인 이용자예탁금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인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 2 신설).
- 나.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 다.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적합 여부 판단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함 (안 제7조제3항).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4항 신설).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자예탁금(이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 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예치, 신탁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 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거나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현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가맹점을"을 "제4조제3항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 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업종으로서"를 "업종 또는 사업체로서"로, "제한 업종을"을 "제한업종 또는 등록 제한사업체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를 "한 자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인에게 알려야"를 "결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한업종을"을 "제한업종 또는 등록 제한사업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지원"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중 "자는"을 "자 및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자하는 자는"으로, "3개월"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선 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지역사 당상품권 이용자예탁금(이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양도,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은행등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예치,신탁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 당상품권 운영자금(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위한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 계좌에 보관하 	현 행	개 정 안
여 관리하거나 상환보증보험 가 입 등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예탁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 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지역사 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이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양도,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은행등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예치,신탁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위한 자금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계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거나 상환보증보험가입 등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 , , , , , , , , , , , , , ,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u>가맹점</u>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2. (생 략)
-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 니한 <u>업종으로서</u>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u>제</u>

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
자금의 관리현황을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지	<u> </u>
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퍼	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പ്≀ി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 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 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u>제4조제</u> 3항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사 <u>랑상품권 가맹점을</u>----
 - -----. <u>다만, 지방자치단체의</u>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2) ------------
 - -----.
 - 1. · 2. (현행과 같음)
 - 3. -----
 - --- 업종 또는 사업체로서---

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u>받은 날부터 7일</u> 이내에 등록 여부를 <u>결정하고</u>,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④ (생략)

-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 1. (생략)
 -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
 2. -----

 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
 --제한업종 또는 등록 제한사

한업종 또는 등록 제한사업체
르 <u>크</u>
3
<u>한 자가 지역사랑상</u>
품권 가맹점으로 적합한지 여부
를 판단하여 결정하여
<u>야</u> <u>이 경우 지방자치단체</u>
의 장은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
점 등록 현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1. (현행과 같음)
2

우 3. (생 략) <신 설>

② (생략)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u>자는</u> 이 법
시행일부터 <u>3개월</u>까지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u>업체를</u>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일
정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
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
<u>다.</u>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
원) ①
<u>행정적·재정적 지원</u>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
한 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자 및 이 법 시행 이후</u>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u> 자는</u> <u>2021</u>
년 12월 31일

있다	
79X 1.	•